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단66818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 등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김재훈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0. 1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6.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계약금 반환 청구 부분 (긍정)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C 답 487㎡ 지상에 단독주택(지상 2층 규모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대금 160,000,000원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기초부분에 철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이 사건 건물의 기초부분에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와이어메쉬를 사용하였다.

3) 감정인 D은 이 사건 건물 중 특히 기초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정을 하였다.

○ 건축구조기준의 목구조 설계요구사항 등에 의하면, 건물의 기초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한다. 골격에 해당하는 철근은 콘크리트와 복합체로 되어 구조체를 견고하게 하고 인장력이 약한 콘크리트를 보완해 내력상 또는 역학상 구조체를 보강하는 역할로 균열방지가 목적인 와이어메쉬가 철근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등의 외력을 최종 집결하여 지반에 전달시키는 구조이므로 철근배근이 없는 와이어메쉬로 시공된 기초는 제대로 된 기초의 역할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건물의 기초는 철근이 배근되지 않고 와이어메쉬가 시공된 점, 도면과 상이하게 매트기초 전단벽 아래 부분이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조적조로 시공된 점, 시공된 기초부분의 콘크리트 두께가 도면에 기재된 T=300mm가 아닌 T=100mm로 시공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건물의 기초는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건물의 기초에 철근이 전혀 시공되어 있지 않아 기초보강이 어렵고 지반조사 자료도 없어 지반의 보강설계도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안전성을 보충하기 위해 보강공사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7 내지 9호증의 8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완성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물의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의 기초부분에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와이어메쉬를 사용하였고 도면과 상이하게 콘크리트를 현저하게 얇게 타설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아 그대로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초부분의 안전성을 보충하기 위한 보강공사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완성부분은 도급인인 원고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니,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인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계약금 2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 (부정)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기초부분에 당초 피고가 약정한 철근이 아닌 와이어메쉬를 사용하는 등의 부실공사를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는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 등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 확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6.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